안내자료

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

2004. 2

산학협력민관협의기구

Ⅰ.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개요

1.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목적

□ 종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여 대학생에게 기업 장기근무 (6개월)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, 대학과 기업에게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 및 발굴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□ 산학협력을 교수와 기업의 개인적 협력 중심에서 대학과 기업의 기관간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, 학생중심의 인재양성 분야로 확대합니다.

2.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특징

□ 기업과 대학간 협약체결의 연계 및 조정

- 대학이 각자 참여신청을 하면 협의기구가 조정자 역할을 하여 기업과 대학의 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합니다.
- 따라서 개별 기업과 대학 입장에서는 동시에 매우 많은 상대방과 협약체결시도를 하는 효과를 가져와 협약체결 확률이 높아지며 사업의 시행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또한 협의기구에서 서로간의 입장 및 현실을 고려한 조정을 실시하므로 상호간 요구조건이 충족되어 기업과 대학이 협약내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.

□ 사전직무교육의 의무화

- 사전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참여 학생에게는 현장 적응력 및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, 기업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.
- 사전직무교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자체교육이 어려운 기업은 협의기구가 지정한 기업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학점부여 및 장기연수 의무화

- 기업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반면 학생은 학교 수업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만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점부여 및 장기연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.
- 이러한 장기연수(6개월) 실시에 따라 기업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학생은 학교수업 참여시 이수할 수 있는 학점(8~15학점)을 부여받게 되어 휴학을 하지 않고서도 기업현장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3.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구성

□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은

① 현장연수, ② 사전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① 현장연수

- 기업과 대학간 협약체결을 통해 대학생을 현장연수생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또한 연수생은 1인당 월 30만원 이상씩의 연수수당(교통비 및 중식비)을 지급받게 됩니다.

② 사전직무교육

- 현장연수 실시가 확정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실시 전, 적응력을 키우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개월 미만으로 40~160시간동안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- 기업-대학간 협의에 따라 기업이나 민관협의기구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4.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절차

1단계	**사업 공고** (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)
2단계	**참가 신청** (각 기업 및 대학)
3단계	**기업-대학 연계작업** (협의기구의 조정 및 유도)
4단계	**기업-대학 협약 체결** (협의기구의 지원)
5단계	**참가희망 대학생 참여 신청** (각 대학)
6단계	**연수대상자 선발 및 계약 체결** (기업-학생)
7단계	**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제출** (각 대학)
8단계	**사전직무교육 실시** (기업 또는 사전직무교육기관)
9단계	**현장연수 실시** (해당 기업)
10단계	**프로그램 종료 및 보고서 제출** (기업, 대학)

5. 각 시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

1단계 : 사업 공고

▶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에서는 사업 실시 전 많은 기업과 대학,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On/Off-Line을 통하여 사업시행 공고를 실시하며, 각 기업 및 대학, 학생은 사업공고를 확인합니다.

2단계 : 참가 신청

▶ 사업 공고 후 기업 및 대학은 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역할과 의무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각각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▶ **참가신청서류**

- **기업 :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(기업용)」(서식 1)**
  :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」(서식 2)
- **대학 :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(대학용)」(서식 3)**
  :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지원계획서」(서식 4)

3단계 : 기업·대학간 연계 작업

▶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는 각 기업과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많은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간 연계를 지원합니다.

4단계 : 기업·대학간 협약 체결

▶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의 조정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각 기업과 대학은 **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협약서(서식6)」**를 표준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며, 복수의 상대방과 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.

▶ 협약이 체결되면 대학은 협약서 사본을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로 송부하고,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는 협약서 사본 수령 후 **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」**를 발행합니다.

5단계 : 참가희망 대학생 참여 신청

▶ 협약이 체결되면 대학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의 명단과 내용 등을 소속 학생에게 공고한 후 학생의 참가신청을 접수합니다.

▶ 학생은 학교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 **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(학생용)」(서식 5)**를 제출합니다.

6단계 : 연수대상자 선발 및 계약 체결

▶ 대학이 참가희망자의 자료를 기업에 제공하면, 기업은 면접 등을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, 선발된 연수대상자들은 기업과 **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계약서」(서식 7)**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

7단계 : 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제출

▶ 연수생대상자 선발이 확정되면 대학은 프로그램 실시 3일전까지 **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계획서」(서식 8)**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.

- 첨부서류

  ① 대학-기업간 프로그램 협약서 사본

  ② 연수생 신청서 사본 및 연수생 명단(서식9)

  ③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참가 확인서(협의기구 발행본)

  ④ 협약기업의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사본

※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계획서」에는 현장연수 및 사전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협의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8단계 : 사전직무교육 실시

▶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연수생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▶ 사전직무교육은 기업과 대학간 협약내용에 따라 대학이 해당 기업 또는 협의기구에서 사전직무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,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7단계의 「프로그램 실시계획서」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.

- **첨부서류**

  ① 사전직무교육 계획신고서(서식 13)

  ② 사전직무교육 계획서(서식 14)

9단계 : 현장연수 실시

▶ 사전직무교육이 끝나면 기업과 대학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수생에게 현장연수를 실시합니다.

▶ 기업은 연수생에게 정규적인 사내업무를 부여하고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,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현장연수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.

▶ 연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약정해지를 할 경우 연수생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「**현장연수참가 증명서**」**(서식 12)**를 발행하여야 합니다.

10단계 : 프로그램 종료 및 보고서 제출

▶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연수생은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하고, 대학은 학교 자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생 개인별 보고서와 함께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.

▶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수생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산학협동교육 학점을 부여받게 되고, 원하는 경우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에서 발급하는 「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수료증」도 받게 됩니다.

※ 연수수당 지급

▶ 참여기업은 참여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(최소 월 30만원이상)을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으로 지급합니다.

▶ 대학은 프로그램 실시후 매월 **출석부(서식 11) 사본**을 첨부한 **지원금신청서(서식 10)**를 지방노동관서에 유선(FAX) 등으로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며, 지방노동관서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
Ⅱ. 2004년 1학기 시범사업 관련 공지사항

1.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예상되는 어려움

□ 1차 수요조사 실시

- 2003년 12월 대학교육협의회,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기관과 대한상의, 전경련, 중기협 등 경제단체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대학 및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- 이를 바탕으로 희망대학과 기업간의 매칭작업을 시행공고와 관계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.

□ 사업의 난제 : 시간촉박 등

- 올해 1학기에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는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.
- 시범사업의 경우 대학측 수요가 있더라도 기업과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(8~15학점)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.
- 기업과 대학간 매칭후 학생모집, 선발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주어진 시간이 짧고 방학기간중이라는 특수성을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은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
2. 향후 일정과 추진방안

□ 향후 일정

- 이번 시범사업은 대학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3월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.
  - ·또한 「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시행지침」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실시 3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 - ·따라서 향후 모든 준비작업은 3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.

- 이러한 시간상 제약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장 바람직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향후 일정표>

시 기	추진 내용
2.10(화)	- 사업 공고
2.10(화)~2.13(금)	- 신규 기업 및 대학 신청 접수
2.10(화)~2.21(토)	- 기업-대학간 협약 체결 - 대학측의 연수대상자 모집
2.23(월)~2.28(토)	- 기업측의 연수대상자 인터뷰 - 기업측의 연수생 선발
3. 2(화)~3. 6(토)	- 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등 준비 완료 - 대학-사전직무위탁교육기관간 협의 및 계약 완료
3. 8(월)~3.10(수)	- 사전직무교육 커리큘럼 등 준비 마무리
3.11(목)	- 대학측,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시계획서 접수완료
3.15(월)~8.31(화)	-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시행

□ 추진방안

- 각 단계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.
- 작년말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의 수요조사에 따른 기존 기업, 대학측 신청은 바로 협약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
  - 이에 따라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월 10일(화)부터 기업-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  - 동시에 기업-대학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라면 대학은 연수대상자 모집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새로 신청된 기업 및 대학의 경우 신속하게 매칭과 협약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  - 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관협의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대학으로 매칭을 진행하며, 동시에 기업-대학간 협약을 유도하겠습니다.
- 각 추진단계를 종료한 대학 및 기업은 일정과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협약 관련 유의사항

- 수요신청을 한 기업이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조건 등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-대학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민관협의기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업과 대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